

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. 10. 16 선고 2024가단1034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D

변 론 종 결 2024. 9. 25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6.

주 문

-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소외 E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2021. 12. 14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
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위 E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. 1. 17. 접수 제12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장진영

별지